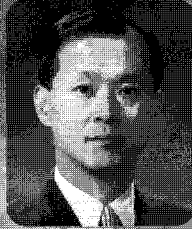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제 도입



장 기 윤 수의사무관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1. 머리말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시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없는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여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검역관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물 및 축산물의 국제교역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그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특정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는 관행은 과학적인 정당성이 부족할 뿐더러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를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제 개념을 주창하여 동식물위생협정(WTO/SPS협정)에 반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지역개념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과 우리나라의 향후 대책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지역비발생 인정관련 국제규정

1995년 1월 1일 발효된 WTO/SPS 협정 제

6조제2항에서 「병해충 안전지역(비발생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Concept)을 인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에 대해 세부적인 국제기준 없이 비발생지역을 당사국간에 협의에 의하여 인정하여 오는 등 선택적인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차기 SPS회의에서 비발생지역 인정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세부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회원국의 의무규정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WTO/SPS 협정상 비발생지역 인정은 지리적 여건, 행정적 구분, 주변 가축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질병별 위험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수출국은 요청하는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수입상대국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WTO/SPS협정에서 국제기준 제정기관으로 인정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국제동물위생규약 제1, 3, 5장에서 수입국은 비발생지역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입시 지역별 가축위생상황에 따른 조치를 수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OIE는 수입위험분석 및 지역화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일부 질병에 대하여 비발생 지역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역인정 절차 등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비발생 제도에 관심이 높은 EU 및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세부적인 지역개념 인정절차 및 기준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외국의 동향

가. 일 본

일본은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관계관을 해당국에 파견하여 비발생지역 인정제도 도입관련 수입위험분석기법을 연수케 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지역화 인정에 대하여는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다. 돼지콜레라에 대하여는 멕시코의 소노라지역을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하였고 멧돼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는 독일에 대하여도 이 병이 발생하지 않는 주를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하였으나 구제역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비발생지역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나. 미 국

미국은 1997년 동물 및 축산물 수입에서 지역화를 인정하고 인정 신청절차를 규정하는 법(9 CFR PART 92)을 제정하였으며, 신청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전염병 발생 및 예찰상황·차단방법·수의조직의 검사 및 긴급방역능력 등을 평가, 수입 위험분석 실시를 하여 비발생지역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우루과이 아르티가스(Artigas)이외지역을 구제

역 비발생 지역으로 인정한 바 있었다.

다. E U

EU는 회원국간 국경검역 상황이 불확실한 실태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UR협상시 지역화를 제창하였고 SPS협정에 지역개념을 반영시켰으며, 비발생 지역화 개념을 국제교역뿐만 아니라 EU 지역안의 가축방역 정책에 폭넓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호 주

호주는 2000년 8월 호주검역검사청(AQIS)에서 분리된 농림수산부 생물안전처(Biosecurity Australia)에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정부는 외국에서 동물이나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고 주요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고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 인정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겨우 돼지 오제스키병 비발생지역인 뉴질랜드 남섬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마.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농림부 생물안전처(Biosecurity Authority)에서 체계적인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멕시코 소노라지역을 돼지콜레라 비발생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선진국가들은 거의 가축질병 비발생지역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철저한 수입위험분석을 통해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어느 나라도 비발생 지역인정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추세이다.

가축질병 비발생지역의 인정은 수입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국이 위험분석을 한 다음 결정하게 된다. 현재 비발생지역 인정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요청국의 비발생지역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상황, 지역방역기관의 능력 등을 현지조사하여 수입위험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불허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위험분석과정에서 자국내 축산농가·단체 등의 의견도 받고 있다.

4. 우리나라의 기존 정책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동물 및 축산물 수입허용시 구제역, 광우병,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하여는 국가 비발생을 전제하고 이를 수입위생조건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콜레라, 닭뉴캐슬병 등 기타 질병에 대하여는 동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라도 비발생지역에서의 수입을 허용하여 왔었다.

현재 외국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 수입요청을 받은 때에는 설문서 송부, 현지조사 등 8개 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입허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고 수입상대국의 가축질병 정보를 수시로 파악, 질병발생 등 유사시 수입중단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5. 제주도산 돼지고기 일본수출과 비발생지역 인정 관계

'02년 5월 3일 우리 나라에서 구제역이 재발생됨에 따라 '02년 4월 29일 선적된 제주도산 돼지고기 40톤이 일본으로부터 반송되었다. 우리나라는 '02년 11월 29일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일본측에 돼지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하였다. 그동안 일본측과 세부자료 제공 등 협

의를 진행한 결과 금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관계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구제역 방역상황과 제주도의 돼지 및 돼지고기의 반입차단 방역관리, 도축장 위생관리 실태 등 위생상황을 조사하게 되었다.

일본 관계관의 조사결과가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될 경우, 일본은 자국내 가축전염병 예방시행규칙을 개정, 우리 나라를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며, 일본정부와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돼지콜레라 비발생지역인 제주도 돼지고기를 우선으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산 돼지고기만 일본에 수출하게 될 경우 질병 비발생지역인정 제도를 도입한 최근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등으로부터 동물 및 축산물의 수입요청 압력이 제기될 것이라는 축산단체 등의 우려가 있었다. 그 이유는 중국은 2001년 산둥성·요녕성의 요녕반도, 사천성의 사천분지·중경시·해남성·길림성의 송요평원 등 6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선정하여 구제역 등 주요 가축질병 비발생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통상전문가(7. 19)·축산단체 관계자(8. 4)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던 바, 국제적으로 현

단계에서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님을 인식하고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추진과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은 별개사안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자국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키는 제주도산 돼지고기부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서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제도와 연계를 하지 않겠다는 논리인 것이다.

6.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제도 관련 향후 대책

동물 및 축산물 교역시 가축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제도 관련 WTO/SPS 또는 OIE 등 국제회의에 참석, 구체적 절차와 세부기준 마련 시 우리나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비발생지역 인정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위험분석을 통해 시행할 수 있도록 수입위험분석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수입위험분석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앞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직개편시 위험분석과 등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테스크포스팀은 금년 말까지 비발생 지역 인정을 위한 자체적 수입위험분석지침을 마련하여 위험확인·위험평가·위험관리·위험정보교환 등 위험분석 절차를 확립하고, 질병발생상황·유입차단·예찰 및 감시활동 등 단계별 평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농림기술연구과제로 관련 대학 등과 수입위험분석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

시하여 국제적인 수입위험분석기관의 분석기법 조사 및 지속적인 자료축적으로 위험분석 자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험분석모델 개발을 추진할 것이다.

수입위험분석 관련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 및 축산물 수입위험분석 연구과정을 2004년도 행정자치부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동 과정에 의하여 관계관을 미국 “가축위생 및 역학센터” 등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위험분석기관에 장기 파견하여 분석기법을 연수토록 하고 국내외 장단기 위험분석 교육과정에 관계관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7. 맺음말

가축질병 비발생지역의 인정은 수입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수입국이 위험분석을 한 다음 결정하게 된다. 현재 비발생지역 인정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요청국의 비발생지역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상황, 지역 방역기관의 능력 등을 현지조사하여 수입위험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불허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또한 위험분석과정에서 자국내 축산농가·단체 등의 의견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축질병 비발생 지역화를 인정하게 되면 가축질병이 발생하는 나라에서 값싼 축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될 것이라는 우리나라 축산업계의 염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서 열거한 분야별 준비사항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양돈**